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LX파트너스』는 '기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LX파트너스』(이하 '공사', '개발원', '파트너스'라고 한다)가 '기관 간 협력사업'에 관한 각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협약당사자는 상대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에 따라 상호협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에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3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

협약당사자는 자활 세차사업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공사는 공사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차서비스의 자활센터(자활기업) 이용,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한다.
2. 개발원은 '기관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사업 정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자활사업을 개발·점검하고 협력사업의 확산과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3. 파트너스는 파트너스의 사업중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업무 인력의 결원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자활센터(자활기업)의 인력을 활용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
4. 협약당사자는 기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정보, 자료의 교류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 제4조(협조 창구 마련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협약당사자는 협약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전담자를 지정하고 필요 시 각 협약당사자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사업 추진을 논의 한다.

### 제5조(협약기간)

1. 본 협약은 협약기관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협약 연장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 협약체결 없이 1년씩 효력이 자동 갱신된다.

###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통해 상호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단, 법령이나 정부기관 혹은 재판상의 요구에 따른 공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기타사항)

1.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 변경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문서로 처리한다.
2. 본 협약과 관련된 대외홍보 및 언론발표 등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다.
3. 공사, 개발원, 파트너스는 상기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공사, 개발원, 파트너스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한다.
6.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며 1년 단위로 성과를 점검한다.

이 협약에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0월 31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L X 파트너스 한국국토정보공사

원 장 이 병 학

대표이사 성 기 청

소장 최 창 학

이 병 학

최 창 학